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2021. 6. 22.

社會建設委員會

專門委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　　과

의안 제353호로 2021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의 내용 중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 조문 및 기타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변경(안 제2조제4호나목)

- 시작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

나.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자격 규정 변경(안 제6조제1항제7호)

- 기관명과 직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던 규정을 ‘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’으로 변경함

다.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총괄조정관 변경 및 지원협력관 신설
(안 제18조제1항제3호, 안 제18조제1항제4의2호)

1) 총괄조정관을 행정지원국장에서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

2) 지원협력관을 신설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맡게 함

라. 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 지원협력관을 추가함
(안 제20조)

마. 재난취약계층의 예시에 '임산부' 포함(안 제49조)

바. 기타 표현 정비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: 재난취약계층을 명시함에 '임산부' 추가할 것을 권장받고 이를 수용함

라. 입법예고(2021. 4. 8. ~ 4. 28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조례의 내용 중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 조문과 기타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의 시작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였고
-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자격 규정을 변경하였음.
- 안 제18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업무분장에 맞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행정지원국장에서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, 지원협력관을 신설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맡게 하였으며,
- 안 제20조에서는 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 지원협력관을 추가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 조례와 계획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,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난 대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